

종계장 · 부화장 방역관리 강화대책

농림부

목 표

- 종계장 · 부화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등 질병관리 강화
 - 난계대 질병인 추백리 · 가금티프스 발생 최소화
 - 종계장 · 부화장의 위생관리 강화로 건강한 초생추 생산, 공급
- 농가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통한 농장간 차단방역 철저
 - 건강한 종란 또는 초생추 입식으로 질병청정 농장 지향
 - 소독시설 설치, 소독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실시



중점추진방향

-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방역관리 강화
 - 검사기관, 검사방법 및 검사시기 개선으로 검진효율성 향상
 - 살처분 보상범위 확대 및 도태장려금 지급 추진
- 부화장 위생방역관리 강화
 - 부화장과 종계장을 연계한 공동방역체계 구축
 - 차단방역, 종란 및 부화기 소독, 거래기록 보존 등 제반 방역사항 준수
- 닭 질병예방 및 차단방역 교육 · 홍보
 - 닭 질병 전국순회교육 등 예방관리교육 실시
 - 농가 자율방역 홍보비디오 활용 교육 · 홍보

- ① “종계장 · 부화장방역관리요령” 제정,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
- 종계장 · 부화장의 위생관리와 주요 닭전염병(추백리 · 가금티프스 · 뉴캐슬병 등) 방역

에 관한 사항을 제정, 총괄관리 운용
- 종계장 관련규정을 통폐합 및 부화장 및 가금티프스 방역 신설

② 종계장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제도 개선
 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

구분	현행	개선
대상질병	추백리	추백리 + 가금티프스
자가검사	의무검사	자율검사
확인검사		
-검사시기	-120일령 이상 (매년 1회이상)	-120일령~산란개시전 (1년내에 추가검사)
-검사기관	-시·도 가축방역기관	-원종계 : 검역원 -일반종계 : 시·도 가축방역기관
-검사시료	-사육수수의 2~3% 수준	-계사당 30수이상 -양성계사 재검사시 300수이상
-검사방법	-평판응집반응	-평판응집반응 -ELISA(양성개체 확인검사용)

※ 검사기관의 확인검사 개시전 종계장의 자율검사 및 자율도태를 추진하기 위해 2005.3.1까지 유예기간 부여(세부 검사절차 : 참고2)

-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농장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
 - 분양 종계장·부화장 추적조사 및 해당농장 방역규정 위반 처분

③ 추백리·가금티프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 추진

- 지급대상 : 확인검사결과 양성종계군과 함께 사육된 종계로서 닭 도축장으로 출하한 물량
- 지급금액 : 수당 5,000원(세부지침 : 참고3)

④ 닭 질병 방역 홍보·교육

- 종계장·부화장 경영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

시지원(매년 1회 이상)

- 협조 :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·양계협회·계육협회 등
- 양계농가가 많은 정착농원 방역교육은 한빛복지협회 주관으로 별도 실시(매년 1회)

⑤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방역조치 미이행 및 우수 종계장·부화장 축산전문지 공표(축산신문 및 월간양계·양계연구 등 자체발간지)

- 대상
 - 양성종계군의 동거종계에 대한 도태 또는 종계 사용금지 조치 등 미이행 종계장
 -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농장 추적조사를 통해 감염종계 유래 병아리 분양 종계장 또는 소독 등 방역관리 부실 부화장
- 공표절차 : 양성종계군 판정 또는 추적조사 결과 → 농림부 보고 → 방역조치사항 확인 → 전문지 게재(분기별)

⑥ 종계장·부화장의 예방접종·소독실태 현지 조사 및 행정처분

- 뉴캐슬병 예방접종(의무), 가금티프스 예방

접종(금지) 등 이행여부 및 소독실태 현지조사 강화

- 검역원·양계협회 합동 현지조사 및 위반농장 행정처분(과태료) 강화

7) 종계용 배합사료의 미생물 오염방지

- 배합사료원료 관리 및 생산단계별 살모넬라

등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위생 관리 철저

- 종계용 배합사료는 펠릿 또는 크럼블화, 가루사료는 열처리 후 공급토록 하여 오염미생물 제거, 완제품 살모넬라 검사 실시
- 사료공정서 개정시 종계사료에 살모넬라 미검출 규정 신설

[참고 3] 추백리·가금티프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

■ 지급대상

- 종계장의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결과 양성종계군 동거 종계
 - 확인검사(120일령~산란개시전) 결과 도태한 계군에 대해서만 지급
 - 추가검사(확인검사후 1년이내 재검사) 결과 도태대상이 되는 계군은 이미 경제수명이 다한 노계로서 자율도태 추진

■ 지급금액

- 1수당 5,000원(정액) : 23주령 육용종계(우) 생산비의 일부 보상지원
 - 종계생산비(14,710원) 분담 : 도태장려금(5,000), 계육판매대금(2,000), 농가부담(7,710)
 - ※ 종계생산비(14,710원) : 병아리

(3,000), 사료(5,760), 방역(1,500), 인건비(2,000), 광열비 등(2,450)

- 연간 총소요액 추정 : 10억원(20만수)
 - 종계입식수 4백만수/년, 양성종계군 5%(2003실태조사) 기준으로 추정
 - 4,000천수×5%×5,000원 = 10억원

■ 도태사실확인

- 시·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도축검사관

■ 도입시기

- 2005년 확인검사분부터 지급

■ 지급예산

- 2005년 살처분보상금·도태장려금 예산(300억원)에서 지원